

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원은 가천대학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(이하 '본 연구원'이라 한다)라 부른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원은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

제4조(연구원의 목적) 본 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연구역량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선도하며,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바이오나노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연구원의 사업) 본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바이오나노 분야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
2. 바이오나노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공급 사업
3. 외부연구기관의 위탁연구 및 사업
4. 국내 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
5.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6조(구성)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장, 참여교수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, 연구실장, 행정실을 둔다.

제7조(자격 및 임명) ①연구원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연구원장은 본 연구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총괄한다.

제8조(연구에 참여한 교수) ①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 본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한 전공분야 교수로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

②임기는 참여 연구 개발과제의 사업기간으로 하며 본 연구원에 참여 기간 동안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시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5-1-16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제9조(연구실장) ①연구실장은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연구실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,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10조(연구교수 및 연구원) 연구원장은 전문적인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교수(Post-Doc) 및 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1조(직원 및 조교) 본 연구원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2조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인 연구부총장, 연구원장, 연구처장과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원 및 학연교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된다.

제13조(운영위원의 임기) 운영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, 연구비 지원방향
2.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본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임면 및 교체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5조(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
제 4 장 자문위원회

제16조(자문위원회) ①본 연구원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의 국내 외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연구원장이 위촉하며, 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정 및 운영

제17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비 및 산학협력단 보조금
2. 기금 및 연구사업 수익금
3.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
4. 기타 수입

제18조(성과급) 본 연구원의 사업수행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외부지원금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13.05.31)

제19조(회계연도)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20조(예산 및 결산) 본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6 장 규정 개정과 준용

제21조(규정개정 등) 연구원의 규정개정, 해산결의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2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부설연구기관설립및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